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2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조인철・이인선・이개호

위성곤 · 신정훈 · 서천호

박균택 · 정준호 · 정진욱
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.

현행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과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

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 및 제16조).

법률 제 호
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박사·석사 및 학사 과정을"을 "박사·전문석사·석사 및 학사 과정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박사·석사 및 학사 과정의"를 "박사·전문석사·석사 및 학사 과정의"로 한다.

제16조 중 "박사·석사 및 학사 학위를"을 "박사·전문석사·석사 및 학사 학위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학위과정 등) ① 광주과	제13조(학위과정 등) ①
기원에 <u>박사·석사 및 학사 과</u>	<u>박사·전문석사·석사</u>
<u>정을</u> 둔다.	<u> 및 학사 과정을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<u>박사·석사 및 학</u>	③ <u>박사·전문석사·석사</u>
<u>사 과정의</u> 학위수여, 교원의	및 학사 과정의
자격,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	
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	
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「고	
등교육법」에 따른다.	
제16조(학위수여) 총장은 학칙으	제16조(학위수여)
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박사·석</u>	<u>박사·전</u>
<u>사 및 학사 학위를</u> 수여한다.	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
	<u>.</u>